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을 실시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에 재판정 안내문을 통보하고,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정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및 2주간의 의견청취 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구의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2014. 1. 1. ~2017. 6. 30.인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의 재판정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장애인 22명이 재판정 기한을 평균 582일이 경과하도록 재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

았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
구청장은

[시정]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독려, 장애등록 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